

주간 규제 정보

Vol. 417

2022. 09. 26 ~ 2022. 10. 02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3
2. 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 3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4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5
5.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방법은? 쉽게 알아보아요! 6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6. 베트남, 전기 및 전자 장비에서 4가지 프탈레이트 제한 제안 7
7. 영국, 살생물제 규정에 따른 활성염소 사용금지 계획 발표 8
8. 대만, 어린이용 화장품 안전 지침 개정 고시 9
9. 유럽위원회, 새로운 CLP 위험 등급 도입 입법예고 10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0. 중국 마이크로전동기 시장 동향 10
11. 브라질 항공기·헬리콥터 부품 시장동향 15
12. 미국 보디용 세정제 시장동향 22
13. 카타르 케이블 시장 동향 25
14. 임금님께 진상되던 지역 특산물, 미국 증명표장으로 등록하려면? (3부) 3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36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 운동용 안전모 중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의 ‘유지시스템 성능’의 강도 시험방법을 EU, 미국 등 해외 기준과 부합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의 제1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 내‘5.3.2 유지시스템 성능’의 강도 시험 방법에 대해 후크서포트 방식을 삭제하고, 헤드폼서포트 방식으로 단일화

3. 붙임자료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2. 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

- 국토원, 계량기 업계와「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 업무협약」체결 -

□ 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제조·유통 업계가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산업 관련 7개 협회 및 단체와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불법 계량기 :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계량기(저울 등 13종) 중 법에서 의무화한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계량기

** 불량 계량기 :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

《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

- ▶ (배경)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 계량기 유통 채널의 다양화로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 ▶ (일시/장소) '22.9.28.(수) 11:30~13:00/서울 양재 엘타워 2층 오페라홀
- ▶ (참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형기산업협동조합,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 가스계량기검교정협회,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계량산업협회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울,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이 모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 감시에 나선다.
 - 협약을 체결한 협회와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들이 불법·불량 계량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계량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한국계량측정협회 내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감시원(전국에서 200명 위촉) 활동, 시장 사후관리(시판품 샘플링 검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불법·불량 계량기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 전화(1811-8239) 또는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 신고센터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신고가 접수되면 계량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제품 시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뿌리 뽑아 상거래 질서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6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9. 2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절 5.2항 a)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에 형식승인 받은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변경 받은 제품의 검정 및 재검정은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변경 받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형식승인 변경 받고자 할 경우, 형식승인 받은 당시의 기준 또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 3월 29일 이후에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 받고자 할 경우는 제1-1절 5.2항 a)의 개정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 모든 편의점 등(9월까지)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 등(10월부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22.7.20.)

○ 이에 따라 편의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 2.6만개소(전체 편의점 5.3만개소의 약 50%, '22.9월 기준)

※ '22.9월 2주 기준, 전체 편의점(5.3만개소)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 재고에 해당

-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 식약처 허가 자가검사키트 확인(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후 구매
-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5.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방법은? 쉽게 알아보아요!

-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안내서) 개정… 경미한 변경 사례 등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의 종류, 세부적인 보고 절차, 보고 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배포했습니다.

✓ 경미한 변경이란?

- ▶ 외관·포장재료·포장단위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 제품의 안전과 효과에 영향이 적은 변경사항
 - ⇒ 변경내용을 사후에 식약처에 제출*하면 변경허가·인증·신고한 것으로 봄
 - * 30일 이내 또는 매년 최초 허가·인증·신고일(예: '18.2.15.)의 전월 말일(예: 1.31.)부터 역산해 1년간(예: '21.2.1.~'22.1.31.) 변경내용을 허가·인증·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예:'22.2.28.)까지 제출(연차보고)
- 이번 개정은 최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외형(화면) 수정, 의료기기 포장 디자인 추가 등을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 신청 방법 ▲판단 기준 ▲보고 사례(적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자주 묻는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사례

붙임

자주 묻는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사례

□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기기 케이스나 외형의 색상을 변경하는 경우 2. 포장박스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3. 사용자 환경 개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외형(화면) 또는 사용자 환경, 메뉴, 저장매체 등을 수정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아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접촉·삽입(예: 콘택트렌즈 등)되거나 의약품이 첨가 되는 의료기기 (예: 주사기 등)의 외관 색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새로운 포장방법을 추가하거나 멸균포장의 디자인 변경 3.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 분석방법(알고리즘)에 새로운 분석방법을 추가하거나 다른 분석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 혹은 의료기기 고유식별 코드(UDI) 등의 적용으로 포장박스나 용기 라벨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히 원재료의 명칭 또는 부분품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3. 실제 분량이나 농도 등의 변경은 없지만 단순히 단위 표기만 변경하는 경우 (예: mg/dL ↔ mmol/L)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아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재료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관리물질*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환자 검체와 동일하게 반응하는 물질로써, 검사 과정과 결과의 확인을 위해 이용하는 물질 2. 시약 또는 부분품의 주성분(대조물질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3. 기 제출된 안정성 시험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검체 안정성 온도를 상세히 기재하는 경우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6. 베트남, 전기 및 전자 장비에서 4가지 프탈레이트 제한 제안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전기 및 전자 장비(EEE**)에 제한되는 유해물질 목록(RoHS***)을 확대하여 EU와 일치하도록 하는 규정 초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8월 19일에 발표된 전기 및 전자장비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에 따라 다음 4가지 프탈레이트가 베트남의 EEE 제한물질 목록에 추가되어 총 10개 물질이 제한됩니다.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bis(2-Ethylhexyl) phthalate)
-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BBP, benzyl butyl phthalate)
-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

초안은 EEE의 각 새로운 물질에 대한 최대 사용 제한을 킬로그램당 1,000 밀리그램(mg/kg) 또는 0.1%로 설정합니다. 또한 회사는 부록에 명시된 특정 EEE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등록된 테스트 기관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한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59166/vietnam-proposes-restricting-four-phthalates-in-electrical-and-electronic-equipment>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7. 영국, 살생물제 규정에 따른 활성염소 사용금지 계획 발표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는 업체들이 이 물질을 지지하지 않는 한 영국에서 일종의 활성 염소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업체, 전문위원회 및 컨소시엄은 GB* 살생물제 규정(BPR**)에 따른 검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2023년 8월 12일까지 HSE에 통지해야 합니다.

* Great Britain

** The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9월 5일에 게시된 이 지침은 다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염화나트륨에서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활성염소에 관한 것입니다.

- 사람이나 동물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소독제 및 살조류(제품 유형 2)
- 동물용 위생 제품(제품 유형 3)
- 식품 및 사료 구역 소독제(제품 유형 4)
- 식수 소독제(제품 유형 5)

새로운 검토 프로그램 참가자가 나오지 않으면 활성염소를 포함한 제품 및 상단의 제품유형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이 영국,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와 같은 GB 시장에서 제거될 예정입니다.

HSE는 영국 내 해당물질 유통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리도록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58475/active-chlorine-uses-could-be-banned-in-great-britain-under-biocides-regulatio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8. 대만, 어린이용 화장품 안전 지침 개정 고시

2022년 8월 17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FDA*)는 최신화된 「화장품 위생 및 안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금번 고시된 개정된 지침은 최초 버전인 2016년 이후 발표된 것으로 제품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라벨링 권장 사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정이며 지침 자체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침에 포함된 권장 사항은 「화장품 위생 및 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특정 의무 사항에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번 개정 안전지침은 에어로졸, 네일 제품, 치약, 구강청결제를 포함한 제품과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물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 샴푸를 제외한 화장품 라벨에 '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음'을 추가하도록 권장합니다.

- 살리실산(Salicylic acid)
- 칼슘 살리실레이트(calcium salicylate)
- 마그네슘 살리실레이트(magnesium salicylate)
- MEA-살리실레이트(MEA-salicylate)
- 살리실산나트륨(sodium salicylate)
- 살리실산칼륨(potassium salicylate)
- TEA 살리실산(TEA salicylate)

또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섭취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화장품의 외관, 냄새, 색상, 포장, 라벨 및 크기를 식품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files.chemicalwatch.com/Safety%20Guidelines%20for%20Cosmetics%20for%20Children%20%28%29.pdf>

<http://files.chemicalwatch.com/FDA%20Announcement%20No.%201111608018.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9. 유럽위원회, 새로운 CLP 위험 등급 도입 입법예고

유럽위원회(EC*)는 '의심되는'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EDC**)에 대한 범주를 포함하여 CLP 규정에 새로운 위험 등급을 추가하는 초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10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European Commission

**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법안 초안에 설명된 새로운 위험 등급 및 라벨링 위험 설명에는 인체 건강과 환경 모두에 대해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EDC 및 '의심되는' EDC 및 혼합물에 대한 두 가지 별도 범주가 포함됩니다.

업계의 일부에 따르면 포괄적인 분류로 의심되는 범주 2 EDC의 경우 분류 결정은 법률 초안의 부록에 따라 주로 동물 또는 인체 데이터의 증거를 기반으로 하며 인체 건강 및 환경 위험 모두에 대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유기체 또는 그 자손 및 미래 세대에서 내분비 활성 및 부작용의 증거 확인 가능
2. 알려진 증거로 물질을 범주 1(알려진 또는 추정되는 EDC)로 분류하기에 불충분함
3. 내분비 활성과 부작용 사이에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 확인 가능

부록에는 혼합물이 내분비 교란 물질로 분류되려면 적어도 하나의 성분이 범주 1 또는 범주 2 EDC로 분류되어야 하며 범주 1의 경우 0.1% 농도 한계 이상, 범주 2의 경우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70844/proposal-for-new-clp-hazard-classes-opens-for-public-consultation>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578-Hazardous-chemicals-updated-rules-on-classification-labelling-and-packaging_e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0. 중국 마이크로전동기 시장 동향

- 중국 마이크로전동기의 응용분야 중 정보처리 업계의 비중이 가장 커
- 지능화된 전기기계모듈은 중요한 개발 방향

상품명 및 HS Code

마이크로전동기 HS CODE: 850110

시장규모 및 동향

전동기는 대형 전동기, 중소형 전동기, 마이크로전동기를 포함한다. 마이크로전동기란 부피, 용량이 작고 정격출력이 일반적으로 750mW 이하인 전동기를 말한다.

<마이크로전동기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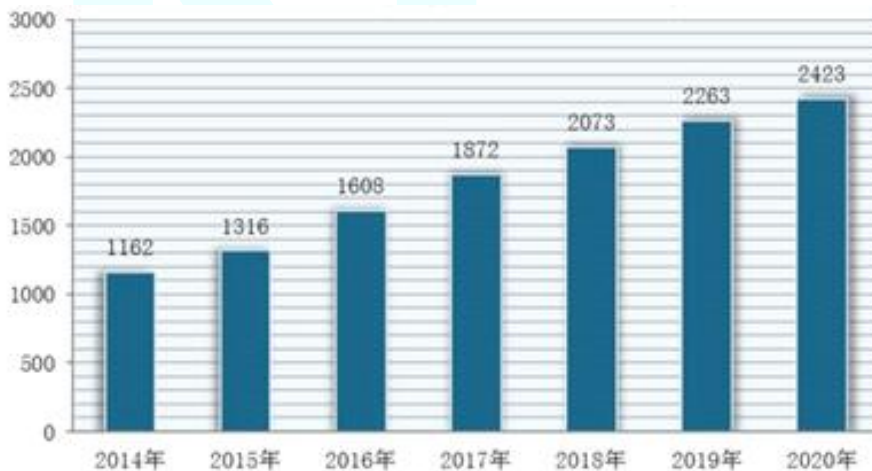
[자료: 관엔텐샤(观研天下)]

마이크로전동기는 독일, 스위스, 일본 등 국가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에서는 개혁개방과 함께 마이크로전동기 산업의 발전이 시작됐다. 현재 독일, 일본 등 국가는 여전히 마이크로전동기 선진기술의 대표주자이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원자재 가격을 바탕으로 세계 마이크로전동기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생산국이 됐다.

마이크로전동기는 공업자동화, 농업현대화, 무기장비현대화, 사무자동화, 가정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초제품으로, 그 응용범위가 매우 넓고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 발전 잠재력이 비교적 크다.

중국 마이크로전동기의 응용분야 중 정보처리 업계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20년 중국 마이크로전동기 시장 규모는 2,42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07% 증가했으며, 이 중 정보처리업에서의 응용 비중이 30%를 넘는다.

<2014-2020년 중국 마이크로전동기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자료: 관엔텐샤(观研天下)]

2020년 중국 마이크로전동기의 수요량은 133억 대로 2019년 129억 대와 비교해 3.2% 증가했다. 앞으로 마이크로전동기의 주요 성장 동력은 신에너지차, 웨어러블 기기, 로봇, 드론, 스마트홈 등 신흥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4-2020년 중국 마이크로전동기 시장수요>
(단위: 억 대, %)



[자료: 화징(华经)산업연구원]

주재국 수입동향

최근 3년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 국가/지역 수입동향은 다음과 같다.

<중국 (HS Code: 850110 기준) 주요 수입국/지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지역명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21/'20)
1	일본	167	169	201	18.7
2	베트남	184	176	188	6.9
3	태국	149	131	177	34.3
4	독일	137	144	160	11
5	스위스	78	92	124	34.7
6	필리핀	52	51	65	25.7
7	캄보디아	63	5	62	20.4
8	대만	61	60	62	2.2
9	한국	44	42	50	17.6
10	오스트리아	29	32	43	35.5
-	총액	1440	1412	1634	15.7

[자료: KITA]

대한국 수입액 추이는 다음과 같다.

<중국 (HS Code: 850110 기준) 대 한국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입액	62	61	44	42	50
증감률(%)	-46.7	-1.6	-27.5	-5	17.6

[자료: KITA]

경쟁동향

중국 마이크로전동기 산업은 주로 동부 연안 지역에 분포하며, 그 중 주강(珠江)삼각지역(광저우·선전·둥관·중산 등)와 창강(长江)삼각지역(상하이·항저우·난징 등)의 마이크로전동기 산업은 이미 공급망과 규모화된 생산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에서의 마이크로전동기 제조는 노동집약형 업종이고, 관련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저렴한 노동력과 충분한 원자재를 바탕으로 저가 제품을 생산 중이다. 아직 자체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해 제품은 주로 중저가 및 저가 마이크로전동기를 위주로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마이크로전동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해외 경쟁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산업 발전에 따라 마이크로전동기 산업 전반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규모가 작고 종합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도태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

<중국 마이크로전동기 주요기업>

구분	회사명	설립연도	주요 응용 영역
1	중산따양전동기주식유한회사 (中山大洋电机股份有限公司)	2000	가전,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기관차, 제빵 기계, 자동 제어 기기
2	항저우웨이광전자주식유한회사 (杭州微光电子股份有限公司)	2009	난방, 환기, 에어컨 및 냉방
3	선전시휘환기술주식유한회사 (深圳市汇川技术股份有限公司)	2003	컴프레서, 전자제품, 리튬전지, 태양광 발전, 석유화학, 전기케이블
4	상하이밍지전기주식유한회사 (上海鸣志电器股份有限公司)	1998	공업자동화, 의료기기, 자율이동로봇, 통신 장비, 자동차
5	장쑤레이리전동기주식유한회사 (江苏雷利电机股份有限公司)	2006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의료 및 스포츠 건강

[자료: 화징(华经)산업연구원]

유통구조

마이크로전동기는 제품 특성 상 주로 생산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일부 생산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기도 한다.

관세율

HS CODE: 85011099

한중FTA 적용세율:

관세(한중FTA)	4.2
증치세	13%

RCEP 적용세율:

관세(MFN)	8.4
증치세	13%

[자료: 중국해관]

MFN 적용세율:

관세(MFN)	9
증치세	13%

[자료: 중국해관]

인증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전동기는 중국품질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에서 중국 CCC인증을 받아야 한다.

CCC인증 적용 제품 범위:

동기(同步)회전속도를 1500rpm(회전차수)/min으로 환산할 때 최대 연속(출력) 정액이 1.1KW를 초과하지 않는 각종 비동기(非同步) 전동기, 교류 동기 전동기, 교류통용전동기, 직류전동기.

* CCC 인증 준비서류

1. 인증 신청서
2. 신청인, 제조업체와 생산공장의 영업허가증
3. 대리 권한부여 통지(대리회사를 통해서 인증 절차 진행 시)
4. 공장 점검 조사표
5. 라벨
6. 제품 설명서
7. 부품 리스트
8. 부품 증서
9. 공장 품질관리 검측 요구
10. 모델 차이점 설명
11. 샘플
12. 제품 조립도, 전기 회로도 혹은 전기 원리도
13. 기타 필요한 자료

시사점

차량용 마이크로전동기

차량용 마이크로전동기 시장 규모는 마이크로전동기 전체 시장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며, 수요는 차종의 등급과 관련이 있다. 일반 승용차는 최소 20-30대, 고급 승용차는 최소 60-70대, 일부 최고급 차종은 100대 이상의 마이크로전동기를 필요로 한다. 신에너지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스마트화 수준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차량용 마이크로전동기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화된 전기기계모듈 연구

가전제품의 스마트화에 따라, 마이크로전동기는 과거의 간단한 시동 제어, 동력 제공정도의 단순 기능 수행에서 속도, 위치, 토크(Torque) 등에 대한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게 발전했다. 마이크로전동기의 지능화 모듈은 각종 가전제품에 널리 응용되어 고정밀, 지능화된 기능을 실현한다.

모듈화란 여러 대의 마이크로전동기의 조합, 마이크로전동기와 센서, 기타 기계·제어 시스템과의 조합을 의미한다. 나아가 마이크로전동기와 변속기, 센서와 제어기까지 하나로 구성해 시스템의 정밀도와 지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 스마트"아이" 시리즈 제품은 마이크로전동기, 온도센서, 적외선탐지기를 연결해 인체의 위치 및 체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풍향, 온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향후에는 센서와 제어기를 고도화하고, 이를 연계하여 지능화된 전기기계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마이크로전동기 제조기업의 중요한 연구 개발 방향이 될 것이다.

자료: 관연텐샤(观研天下), 지연(智研)컨설팅, 화징(华经)산업연구원, KITA, 중국해관 및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브라질 항공기·헬리콥터 부품 시장동향

- 브라질은 Embraer를 중심으로 10여개 항공기·헬리콥터 회사 보유
- 브라질 항공기 회사들은 엔진·동체·엔터테인먼트 기기 등 글로벌 소싱을 활발히 추진
- 우리회사들은 항공부품 수출 및 현지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품명·HS Code(6단위)

- HS코드 : 880330
- 상품명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시장동향

(산업개요)

브라질에는 중형 민간·군사용 항공기를 제조하는 엠브라에르(Embraer)를 필두로 많은 소형·임원용·농업용 항공기 및 헬리콥터 제조 회사들이 있다. 엠브라에르는 1969년 국영기업으로 창립되었으며 지금까지 8,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제조했다. 엠브라에라는 150석 이하 중소형 항공기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품 상당수는 전 세계 고객에게 수출하고 있다. 엠브라에르는 사무실·공장·서비스센터·부품 유통기지 등을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운영한다. 엠브라에르는 민간 항공기 외에도 전투기, 군용 수송기, 레이더,

항법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최근에는 자회사를 통해 구축함 제조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엠브라에르 외에도 브라질에는 옥탄스 에어크래프트, 스코다 아에로나우티카, ACS에비에이션 등 많은 항공기 회사가 있으므로 브라질 항공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들과 접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엠브라에르 외 브라질 항공기 회사>

회사명	설명	주요 제품 사진
Octans Aircra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São João da Boa Vista(SP) ○ 설립 : 2002년 ○ 주요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용 항공기 회사로 2016년 까지 240대 이상 생산 - 2015년 훈련용 항공기 생산을 중단하고 5인용 단일 엔진 항공기 시그누스(Cygnus) 생산 - 첫 시제기는 2020년 운항했으며 테스트·인증작업 진행 중 	
Scoda Aeronáut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Ipeúna(SP) ○ 설립 : 1997년 ○ 주요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륙양용 비행기 'Super Petrel LS' 생산 - 프랑스 Hydroplum II 항공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 - 브라질 내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 판매 - 항공기 정비 사업, 조종사 육성사업도 추진 	
Paradise Indústria Aeronáut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Feira de Santana(바이아주) ○ 설립 : 2001년 ○ 주요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인용 훈련기 생산(Eagle, P1, P1 NG, P2-S, P-4) - 브라질, 미국 등 시장에 판매 	
ACS Av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São José dos Campos (SP) ○ 설립 : 2006년 ○ 주요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용, 아크로바틱 항공기 생산(Sora-100, Sora-E 등) -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품 생산 -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항공기도 개발하고 있음(Z-300 EVTOL) 	
Helibr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Itajubá (MG) ○ 설립 : 1980년 ○ 주요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bus Helicopters 브라질 자회사 * 1978년 설립된 브라질 헬리콥터 생산회사 CTA를 에어버스가 인수 - 군용 헬리콥터 생산 후 브라질 군에 납품 - 민간용 헬리콥터도 생산함 	

Airship do Bras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São Carlos (SP) ○ 설립 : 2005년 ○ 주요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 드론(ADB-1, ABD-2) 개발 및 2009년 테스트 시행 - 감시용 열기구도 생산 - 생산제품은 운송용, 감시(순찰)용으로 활용 	
Stella Tecnolog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Duque de Caxias(RJ) ○ 설립 : 2015년 ○ 주요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용 드론 생산(Atobá) - 아토바(Atobá)는 11미터 길이에 500kg 중량을 가진 남반구에서 생산된 가장 큰 드론 - 고성능 카메라, 센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감시임무에 최적화됨 	

(엠브라에르의 부품 공급사 육성 프로그램)

엠브라에르는 브라질 산업개발청(ABDI)과 2011년 부터 브라질 부품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가치사슬 개발 프로그램(PDCA)'을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와 엠브라에르는 브라질산 부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PDCA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엠브라에르 엔지니어들은 상조세두스캄푸스에 위치한 엠브라에르 사업소나 고객사 공장에서 품질 교육을 실시한다. 2014~2017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엠브라에르가 구매하는 자국산 부품 종류는 43,000개에서 68,000개로 늘어났다. 2015년 기준 엠브라에르는 500만개의 항공기 부품을 브라질에서 구매하였는데 종류는 64,000개에 달한다. 당시, 군용기 KC-390와 E2시리즈 여객기를 개발 하면서 자국산 부품 비중을 확대했다.

E1 시리즈 여객기는 약 6~7,000 종류의 자국산 부품을 사용했으나 E2 시리즈는 이를 11,000개로 늘렸다. KC-390 군용수송기는 약 14,000 종류의 자국산 부품을 사용한다. KC-390는 체코,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에 있는 회사들로 부터도 부품을 공급받는다. 브라질 항공기 부품회사는 약 50~60개에 달하며 상조세두스캄푸스(São José dos Campos), 캄피나스(Campinas), 상파울루(São Paulo), 보투카투(Botucatu), 조인빌리(Joinville),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 등 중남부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엠브라에르는 부품 회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우수 공급사 시상식'을 진행한다. 2018년에는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 Aerospace)와 스테파니니(Stefanini)가, 2020-2021년에는 글로벌 우시나젠(Globo Usinagem)이 엠브라에르 우수 공급사로 선정되었다. 엠브라에르는 자국산 부품회사를 발굴하기 위해 히우그란지두술 산업연맹(FIERGS), 미나스제라이스 산업연맹(FIEMG) 등과 협력하여 구매·파트너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AS부품)

항공기는 안정성이 중요하기에 항공사들은 많은 유지보수 부품을 구매한다. 하지만 유지보수를 위해 항공사들이 별도 AS부서나 창고를 운영하기는 부담스럽다. 엠브라에르는 자사 여객기를 구매한 항공사를 위해 AS부품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엠브라에르X는 비콘(Beacon)이라는 항공기 유지보수 플랫폼을 개발하여 고객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부품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에는 ELMS Aviation 등 솔루션 회사와 계약을 맺어 플랫폼 성능을 향상시켰다. 엠브라에르는 2022년 아비안(AVIAN Inventory Management)과 중역·상업용 항공기용 예비 부품 획득·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아비안은 엠브라에르 공장, 수리창고 등에 항공기 부품을 공급한다. 항공사들은 엠브라에르 플랫폼을 통해 아비안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엠브라에라는 항공사들에게 '프로그램 풀(Programa Pool)'이라는 AS부품 공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이 지라아 에어피스(Air Peace)는 E195-E2, ERJ 145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풀' 시스템을 통해 부품을 주문한다. 에어피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엠브라에르 E195-E2 항공기 13대를 취득했고 17대를 추가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ERJ 145도 8대 보유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스카이하이 항공사(Sky High Aviation Services)도 엠브라에르에서 E190 항공기를 구매했으며 '프로그램 풀(Programa Pool)'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스카이하이는 카리브해 연안에서 처음으로 E190기를 구매한 항공사로 ERJ-145기도 2대 운영하고 있다. 엠브라에르는 2022년 네델란드 '포커 서비스(Fokker Services)'社를 항공기 유지관리(MRO) 업체로 등록했다. 포커 서비스는 '프로그램 풀(Programa Pool)' 플랫폼을 통해 항공사들에게 60개 이상 모터 관련 부품을 공급할 것이다. E170, E175, E190, E195가 주요 서비스 대상 항공기다. 현재 약 50개 항공사가 '프로그램 풀(Programa Pool)'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요 브라질 항공부품 회사>

회사명	내용	사업장 사진
Globo Usinag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85년 ○ 직원수 : 약 300명 ○ 사업장 : Botucatu, São José dos Campos, Gavião ○ 사업 : 연간 약 60만개 부품을 엠브라에르 등 항공회사에 공급 (엠브라에르 비중 80%) ○ 홈페이지 : https://globousinagem.com.br/ 	
Akaer Engenh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92년 ○ 사업장 : São José dos Campos(SP)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엠브라에르와 거래 시작 - 슈퍼 투카노 전투기, E-Jets 동체 부품의 약 50% 공급 ○ 홈페이지 : https://www.akaer.com.br/ 	
UFT Usinag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91년 ○ 사업장 : Várzea Paulista (SP) ○ 직원 : 약 100명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부품 생산, PDCA 프로그램 참가 (2006년부터 엠브라에르에 제품 납품) ○ 홈페이지 : http://uftnet.com.br/ 	
Usimaz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2007년 ○ 사업장 : Jacareí (SP) ○ 직원 : 76명(2012년 기준) ○ 사업 : 2012년 PDCA 프로그램 참가, 항공부품 생산 ○ 홈페이지 : https://www.usimaza.com.br/ 	

Lanm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73년 ○ 사업장 : ○ 사업 : 제트기용 항공부품 공급(엠브라에르 납품 비중 65% 이상) ○ 홈페이지 : http://www.lanmarmetal.com.br/empresa.php?idioma=en-US 	
--------	--	---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신사업 및 부품공급 기회요인)

엠브라에르는 다양한 신형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기에 새로운 부품 공급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엠브라에르 출자회사 이브(Eve)는 '도심형 모빌리티(UAM)'를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 탈레스(Thales)는 이브와 '전기 수직이착륙(eVTOL)'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양사는 도심형 모빌리티 개발 관련 사업성·기술평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품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탈레스는 브라질 상조세두스캄푸스, 상베르나르두두캄푸에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탈레스 브라질 사무소 뿐 아니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력도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엠브라에르는 포르쉐 컨설팅과도 '전기 수직이착륙(eVTOL)' 관련 부품 생산·물류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엠브라에라는 터보프롭기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세계 터보프롭기 시장은 '이탈리아-프랑스계 ATR', 캐나다계 하빌랜드(Havilland)가 장악하고 있었다. ATR은 40~52인용, 72~78인용 터보프롭기를 많이 생산한다. 엠브라에라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70~90인용 터보프롭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터보프롭기에 들어가는 엔진회사로는 프랫&휘트니(Pratt & Whitney)와 롤스로이스(Rolls-Royce)를 검토하고 있다.

엠브라에르는 친환경 바이오연료로 가동되는 항공기 엔진 개발에도 관심이 많다. 엠브라에르는 프랫&휘트니(Pratt & Whitney)와 '100% 바이오 연료로 가동되는 엔진'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중이다. 우선 E195, E2 항공기에 장착되는 친환경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일부 항공사들은 바이오연료 사용하고 있지만 케로신 등 화석 연료를 50% 이상 섞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소재 공급망 사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사태가 불거지자 엠브라에르는 핵심자원 비축에 나섰다. 엠브라에르는 러시아에서 티타늄을 수입하는데 2022년 중순 1.5~2년 재고가 비축되어 있다고 밝혔다. 엠브라에르는 티타늄 대체 공급선 발굴에 나섰다. 반도체 공급난 사태로 엠브라에르 등 항공기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기용 반도체는 제품이 복잡하기에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기 쉽지 않다.

수입동향/對韓 수입규모

브라질 항공부품 수입액은 매년 약 8억 달러~13억 달러 정도로 브라질은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많은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 강국인 미국, 프랑스 등으로 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다. 엠브라에르는 포르투갈에 부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상당량의 부품을 브라질에 수입하여 조립한다. 외국에 부품공장을 운영하면서 환율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한국도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의 항공부품을 브라질에 수출하며 2021년 수출액은 3,316만 달러에 달했다. 대한민국-브라질 간 항공산업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대 브라질 항공부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항공기 부품회사 아스트는 2019년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트라이엄프(Triumph)가 소유한 엠브라에르 'E-jet II 기종 동체 제작 사업권'을 인수했다.

<브라질 항공부품(88033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수입동향>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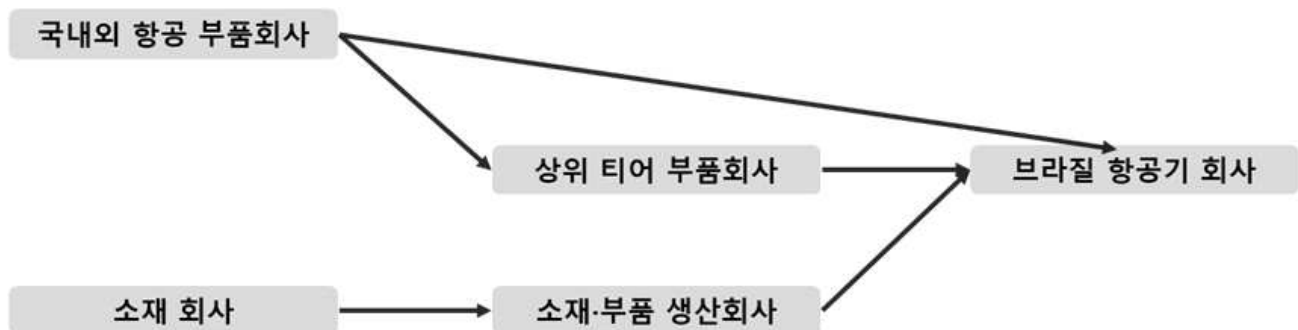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미국	250,416,129	343,605,809	352,886,000	233,957,144	378,310,159
프랑스	188,675,600	214,495,899	209,466,223	147,069,279	121,981,626
포르투갈	101,715,933	149,914,122	129,865,263	112,927,698	88,662,123
멕시코	69,530,954	76,687,972	78,518,245	58,787,136	37,585,212
대한민국	10,374,909	5,531,769	13,324,922	14,794,925	33,163,215
스페인	73,995,499	76,733,124	67,120,076	28,996,353	26,552,538
일본	78,763,478	78,748,060	59,665,931	27,517,765	24,959,274
이탈리아	45,368,754	44,781,082	37,709,402	16,652,471	22,353,475
벨기에	21,459,295	24,705,815	29,876,543	16,901,934	19,114,200
스웨덴	2,098	10,326,601	19,612,538	1,065,440	17,886,888
총계	1,097,246,893	1,330,185,512	1,316,003,552	840,577,141	933,426,864

[자료 : ComexStat]

유통구조

엠브라에르 등 브라질 항공기 회사는 브라질 자국회사 및 해외공급사에게 부품을 구매한다. 글로벌 항공기 부품·솔루션 회사들은 브라질 내 사업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독일회사 리페르(Liebherr-Aerospace Brasil)는 엠브라에르에 기계가공, 표면처리, 제트기 부품 조립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상 파울루주 과라팅게타(Guaratinguetá)에 있는 브라질 회사 공장을 인수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특수강판 등 소재회사들은 브라질 내 가공·부품회사에 제품을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브라질 항공기 부품산업 납품구조>



<주요 브라질 항공부품 수입회사 / 브라질에 항공부품을 수출하는 주요 외국회사>

(2022년 2월~7월 자료 추출)

순번	브라질의 항공부품 주요 수입회사	브라질에 공급하는 해외 항공부품 주요 수출회사
1	EMBRAER SA	VSMPO TIRUS RUSSIAN FEDERATION
2	COMANDO DA AERONAUTICA	SONACA
3	YABORA INDUSTRIA AERONAUTICA	AEROMET INTERNATIONAL
4	AZUL LINHAS AEREAS	AERNOVA AEROSPACE
5	TAM LINHAS AEREAS SA	EMBRAER PORTUGAL ESTRUTURAS METALICAS
6	AERNOVA AEROSPACE DO BRASIL LTDA	AERO ENGINES UNITED STATES
7	HELICOPTEROS DO BRASIL SA	GE AIRCRAFT ENGINES UNITED STATES
8	MODERN TRANSPORTE AEREO DE CARGA SA	LATECOERE
9	COMANDO DA MARINHA	DSV UNITED STATES
10	GOL LINHAS AEREAS SA	BRAZILIAN AERONAUTICAL COMMISSION UNITED KINGDOM

[자료 : Logcomex]

관세율·인증

항공기 부품도 여타 산업재와 마찬가지로 '국립도량·표준화·산업품질청(INMETRO)' 등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 부품은 특수성이 높기 때문에 엠브라에르 등 항공기회사 구매부서에서 자세한 인증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안전하다. 엠브라에르는 웹사이트에 공급자 등록 페이지를 운영한다.

(<https://www.embraersuppliers.com/esuppliers/#/pt-BR/how-to-become-a-supplier>) '상조세두스캄푸스 기술센터(Parque Tecnológico de São José dos Campos)' 등 기관들은 항공부품 회원사들이 엠브라에르 등 항공우주 회사에 납품할 수 있게 제품인증을 지원한다.

<엠브라에르 공급자 등록 홈페이지>



[자료 : 엠브라에르社 홈페이지]

시사점

브라질은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심형 모빌리티(UAM)', '바이오연료 엔진추진 항공기' 등 신형 제품들이 개발되면서 부품사들에게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는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신제품이 개발될 때 공급회사로 등록되지 않으면 향후 납품하기 어렵다. 도심형 모빌리티, 바이오연료 엔진 등 개발에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 항공부품 회사들은 엠브라에르, 헬리브라스 등 브라질 항공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엠브라에르는 향후 전기·수소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브라질 항공기 제조회사에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상위tier 부품회사나 AS부품전문 아웃소싱 회사와 공급·협력 논의를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브라질 주요 항공산업 기관>

기관명	상세
상조세두스캄푸스 기술센터(Pqtec)	https://pqtec.org.br/
브라질 항공우주 산업 협회(AIAB)	http://www.aiab.org.br/associadas.asp * 브라질·외국투자 항공기, 항공부품회사 다수 가입
항공기술연구소(ITA)	http://www.ita.br/

* 브라질 대표 항공우주 인력 양성기관(대학)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자료 : AERO Magazine, TJDFT, Época Negócios, AEROIN, BM&C News 등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2. 미국 보디용 세정제 시장동향

- 2021년 미국 보디용 세정제 시장 103억7870만 달러 규모
- 한국, 미 보디용 세정제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3위

상품명 및 HS Code

보디용 세정제의 HS Code는 3307.90이다.

시장규모 및 동향

지난해 미국 보디용 세정제 시장 규모는 103억7870만 달러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손세정제 판매가 급증했다가 지난해 40% 이상 감소한 것과 함께 비누 판매가 줄어든 것이 전체 시장 규모 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손세정제와 비누 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의 판매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손세정제와 비누는 백신 보급과 경제재개 등의 요인으로 판매가 급감했으나 여전히 전염병에 대한 경계감이 높고,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판매는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2021년 미국의 보디케어 제품 시장 규모>

단위: US\$ 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손세정제	323.4	335.9	343.9	1,899.5	1,105.0
고체비누	1,668.7	1,644.6	1,605.3	1,730.7	1,658.9
입욕제	989.5	1,064.3	1,141.7	1,262.1	1,362.9
보디 파우더	128.3	122.0	112.9	102.8	111.9
보디 워시/샤워젤	3,141.0	3,309.4	3,431.2	3,744.1	4,035.4
여성용 세정제	344.4	351.0	362.9	387.5	403.1
액상비누	1,450.8	1,533.3	1,559.1	2,029.2	1,701.4
전체	8,046.1	8,360.5	8,587.0	11,155.9	10,378.7

[자료 : Euromonitor (Bath and Shower in the US (2022년 5월 발간))]

여성용 세정제 제품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예민한 신체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올내추럴(all natural)’을 내세운 신제품 론칭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한 광고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헤어·보디제품 브랜드인 알리케이 내추럴은 자연유래 성분으로만 구성된 여성용 세정제 라인인 HER을 론칭했다. 여성용품 전문 브랜

드인 허니팟 역시 임상실험을 마친 올 내추럴 성분의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여성용 제품과 여성의 웰니스(wellness)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다.

<알리케이 내추럴의 여성용 세정제 라인 HER>



[자료: alikaynaturals.com]

보디 세정제 제품 시장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트렌드는 프리미엄 라인의 인기다. 브랜드 선택 시, 지속가능성, 제품 성분, 사회적 영향력, 개인화 등 소비자가 고려하는 사항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브랜드들이 고급화 전략을 통해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유로모니터는 프리미엄 제품의 선호도 상승으로 2021년 전체 시장의 3%였던 프리미엄 제품 점유율이 2026년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3년 수입 동향 및 대한민국 수입규모

지난해 미국의 보디용 세정제의 수입액은 1억7753만여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발 경기침체에서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보디용 세정제의 수입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디용 세정제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시장의 19.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3515만 달러로 전년대비 19.7% 증가했다. 프랑스는 대미 수출액 3207만 달러로 수입시장 점유율 18.1%를 기록,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지난해 2268만 달러 규모의 보디용 세정제를 미국에 수출해 시장점유율 12.8%로 3위에 올랐다. 한국 보디용 세정제의 전년대비 수출이 6.7% 줄면서 점유율도 3.5%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미국의 보디용 세정제 수입 현황(HS Code 3307.90기준)>

(단위 : US\$천,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20~'21년 증감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	전체	151,468	149,556	177,525	100.0	100.0	100.0	18.7

1	중국	36,175	29,370	35,154	23.9	19.6	19.8	19.7
2	프랑스	26,400	21,817	32,070	17.4	14.6	18.1	47.0
3	대한민국	17,481	24,314	22,681	11.5	16.3	12.8	-6.7
4	스페인	14,407	18,589	17,648	9.5	12.4	9.9	-5.1
5	캐나다	7,948	8,383	10,909	5.2	5.6	6.1	30.1
6	대만	7,182	5,166	7,870	4.7	3.5	4.4	52.4
7	영국	6,905	5,634	7,784	4.6	3.8	4.4	38.2
8	이탈리아	3,994	3,608	5,913	2.6	2.4	3.3	63.9
9	인도	3,939	3,791	5,330	2.6	2.5	3.0	40.6
10	멕시코	3,046	4,466	4,456	2.0	3.0	2.5	-0.2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World Trade Atlas]

경쟁동향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미국 보디용 세정제 시장의 상위 5개 기업(유니레버 홈 앤 퍼스널케어 USA, 배스&보디 워크, P&G, 콜게이트-팜올리브, 다이얼)이 전체 시장의 56%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유니레버 홈 앤 퍼스널케어 USA는 2020년 점유율이 10%대로 하락했다가 2021년 20%대를 회복했다. 동 기업의 대표 브랜드로는 도브(Dove), 카리스(Caress), 액스(Axe), 수애브(Suave), 세인트 아이브스(St.Ives) 등 중저가의 매스(Mass) 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 2위 기업인 배스&보디 워크는 미국 내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자사 브랜드숍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보디제품과 가정용 방향제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3위 기업인 P&G는 유니레버 홈 앤 퍼스널케어 USA와 마찬가지로 올레이(Olay), 올드스페이스(Old Spice), 아이보리(Ivory) 등 슈퍼마켓과 드럭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는 매스 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유통구조

보디용 세정제는 제조업체-도매-소매 단계의 전통적 구조의 방식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 주요 소매 채널로는 뷰티·퍼스널케어 케어 전문 매장, 드럭스토어, 슈퍼마켓과 식품점, 헤어·네일살롱, 백화점 등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주문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유통이 잘 구축된 판매채널의 선호도가 높고, 브랜드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 직접판매방식(D2C)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

보디용 세정제에 해당되는 HS Code 3307.90의 기본 관세율은 5.4%이나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디용 세정제와 로션 등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FDA는 미국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D&C Act)에 의거하여 미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을 관할 및 규제하고 있으며,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는 FDA의 라벨 표시 기준을 충족하는 라벨 부착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또한 보디용 제품에 대해 FDA가 특별히 요구하는 인증은 없으나 미 세관 통관 이전에 생산 시설등록(Facility Registration)과 성분 검사를 통한 자발적 화장품 등록(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품의 기능이 인체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의 효과가 있다면 일반 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전에 OTC 등록이 필요하다.

전망 및 시사점

유로모니터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 보디용 제품 시장은 연평균 0.3%씩 성장해 2026년 105억486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웰니스 트렌드 확산은 보디용 세정제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과 청결 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육체의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까지 신경 쓰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디케어 제품을 고르는 것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적 관리뿐 아니라 건강 전반을 관리하는 웰니스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접근하고 있다.

유명 뷰티·퍼스널케어 브랜드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보디용 세정제의 경우 단순한 세척제 이상의 포지셔닝이 필요한 때”라며 “많은 브랜드들이 지속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웰니스 기능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웰니스 트렌드에 맞추어 세정제 시장도 매우 세분화되고 있으며, 세정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제품이 브랜드의 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출시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미 보디용 세척제 미국 수입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웰니스 트렌드를 기회로 제품 개발과 홍보를 진행하고, 미국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Euromonitor,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World Trade Atla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및 KOTRA 뉴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 카타르 케이블 시장 동향

- 우리나라 케이블 카타르 시장 점유율 1위
- 내수시장 수요 증가로 총 케이블 수입량 전년대비 20% 증가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 상품명 : 전선, 케이블(8544.60)

카타르는 하위 분류의 세분화를 위해 HS Code를 8자리로 분류하며, 이에 해당하는 4개의 하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8544.60.10: 단면적이 10mm를 초과하는 전기 케이블
- 8544.60.20: 단면적이 10mm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 케이블
- 8544.60.30: 10쌍 이상의 전선으로 구성된 전선 및 전화 케이블
- 8544.60.90: 1KV를 초과하는 전압용 기타 전기 도체

시장 동향

카타르는 우리나라 경기도 크기에 인구 약 280만 명 수준의 작은 국가로 석유 매장량이 풍부하여 지난 10년 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카타르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건설 산업 활성화에 따라, 전기 케이블 및 전선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해왔다.

중고압 전선 및 케이블(1KV 이상)은 일반적으로 전원에서 배전망의 마지막 구간까지 전력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며, 저전압 전선 및 전선 케이블(1KV 미만)은 상업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기반 시설에서 전기를 전도하는 데 사용된다.

중전압, 고전압 및 초고압의 모든 전력 케이블은 1KV를 초과하는 전기 전송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중전압 전선은 전압 용량 1KV 초과 시, 고압선은 전압 용량이 1KV~33KV 사이, 초고압선은 전압 용량이 220KV를 초과할 때 사용된다. 카타르의 중고초고압 케이블 수요는 주로 변전소 및 송전망, 도로 확장으로 인한 지하 케이블 재부설 등과 같은 발전 및 송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데,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Kahrama(수전력청) 및 전기-배관 계약을 담당하는 MEP(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 컨트랙터가 주요 고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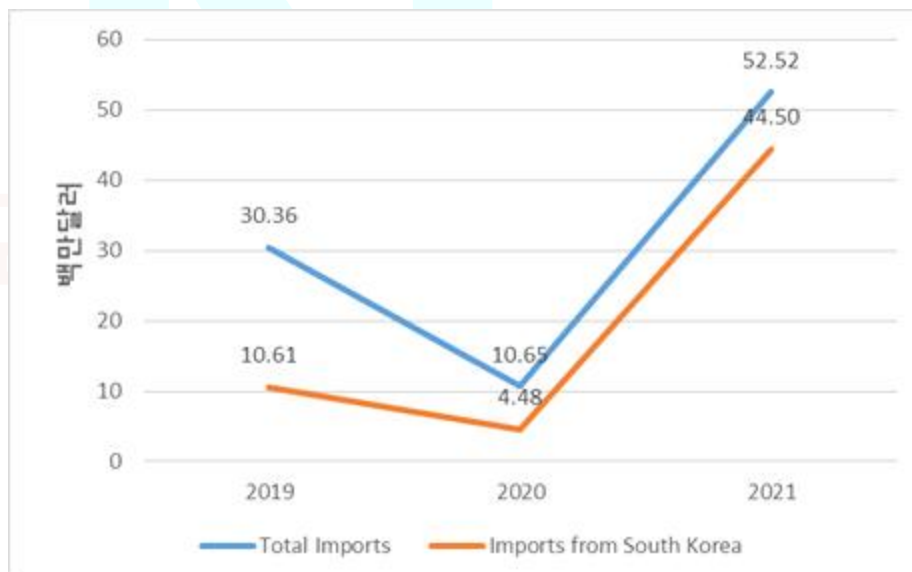
카타르의 저전압 전기 케이블 및 전선에 대한 수요는 주거, 상업, 숙박 및 산업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케이블 및 전선의 주요 고객은 MEP 컨트랙터로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제품, 단열재, 브랜드를 정하여 구매에 이르게 하는 의사 결정권을 가졌으며,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의해 전기 제품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의해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될 전선의 수량이 정해진다.

카타르의 경우 현지에서 사용되는 저전압 전선 케이블 및 전선이 표준화 되어 있는데, 이 저전압 전기 케이블과 전선을 제조하는 두 기업이 존재한다. Doha Cables(www.dohacables.com)와 Qatar International Cables Company(QICC)(www.nexans.qa)로, "Made in Qatar" 캠페인에 따라 카타르의 수전력청인 Kahrama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8년에 이 두 회사와 19억 QAR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카타르는 UAE,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예멘, 이란 등과 같은 국가들에 저압 전선 및 전선을 수출하고 있다.

카타르의 인프라 구축 및 개발 계획을 통해 전기 케이블 및 전선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예상할 수 있으며, 현지의 두 제조사가 전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 그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동향

<2019-2021 카타르 HS Code 8544.60류 총 수입량 및 대한민국 수입량 비교>



[자료: KOTRA 도하무역관]

HS 8544.60의 카타르로의 주요 수입은 4가지 세부 품목으로 세분화된다. 그 중 8544.6010(단면적 10mm 초과)의 수입규모는 전체 전원 케이블 및 전선 수입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한국이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분화된 HS Code 별 수입 동향을 알아보자.

<2019-2021 HS Code 85440.60.10 수입동향>
(단위: 달러, %)

국가	2019		2020		2021		CAGR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한국	9,965,066	37.63	94,975	2.52	8,987,524	59.88	-3
중국	115,770	0.44	154,685	4.10	2,617,538	17.44	183
이탈리아	798,050	3.01	151,781	4.02	1,596,847	10.64	26
미국	506,021	1.91	429,089	11.37	654,215	4.36	9
루마니아	-	0.00	-	0.00	290,062	1.93	NA
스페인	266,544	1.01	-	0.00	191,631	1.28	-10
영국	45,852	0.17	137,046	3.63	111,758	0.74	35
벨기에	175,747	0.66	970,527	25.72	109,635	0.73	-15
독일	37,634	0.14	121,449	3.22	108,678	0.72	42
프랑스	269,861	1.02	302,387	8.01	106,694	0.71	-27
인도	411,659	1.55	1,033,404	27.38	77,457	0.52	-43
폴란드	-	0.00	-	0.00	44,484	0.30	NA
튀르키예	130,711	0.49	105,710	2.80	38,642	0.26	-33
인도네시아	-	0.00	126,936	3.36	37,486	0.25	NA
멕시코	23,189	0.09	-	0.00	35,654	0.24	15
알제리	2,736,422	10.33	125,913	3.34	-	0.00	-100
캐나다	22,510	0.09	-	0.00	-	0.00	-100
일본	10,651,534	40.22	-	0.00	-	0.00	-100
스웨덴	57,680	0.22	-	0.00	-	0.00	-100
태국	245,005	0.93	19,999	0.53	-	0.00	-100
베트남	22,172	0.08	-	0.00	-	0.00	-100
총계	26,481,427	100.00	3,773,900	100.00	15,008,305	100.00	-17.24

[자료: Foreign Trade Statistics portal - Public Statistics Authority]

해당 전선 및 케이블(HS Code 85440.6010-단면적 10mm 초과)의 총 수입은 2019년 26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20년 370만 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2021년으로 1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전체 수입량 중 약 60%인 9백만 달러의 케이블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17%와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9-2021 HS Code 8544.60.20수입동향>
(단위: 달러, %)

국가	2019		2020		2021		CAGR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인도	329,557	29.28	221,015	25.96	602,740	70.42	22
미국	583,605	51.85	507,959	59.67	253,172	29.58	-24
벨기에	86,922	7.72	45,905	5.39	-	0.00	-100
중국	19,226	1.71	-	0.00	-	0.00	-100

이탈리아	24,355	2.16	-	0.00	-	0.00	-100
멕시코	14,281	1.27	22,768	2.67	-	0.00	-100
네덜란드	-	0.00	17,258	2.03	-	0.00	0
오만	19,409	1.72	36,327	4.27	-	0.00	-100
폴란드	48,254	4.29	-	0.00	-	0.00	-100
총계	1,125,608	100.00	851,232	100.00	855,912	100.00	-9

[자료: Foreign Trade Statistics portal - Public Statistics Authority]

카타르는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해당 전기 케이블 및 전선(HS Code 8544.60.20-단면적 10mm 이하)을 수입하지 않았으며, 주요 수입국으로 인도와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 두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2019-2021동안 급격히 증가했지만 2021년 수입의 70%가 인도로부터 발생한 반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에 약 60%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절반 수치인 30%로 감소했다.

<2019-2021 HS Code 8544.60.30수입동향>

(단위: 달러, %)

국가	2019		2020		2021		CAGR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중국	644,854	73.25	4,387,735	98.30	35,510,351	99.75	280
인도	158,175	17.97	75,764	1.70	50,836	0.14	-32
한국	27,034	3.07	-	0.00	23,842	0.07	-4
미국	-	0.00	-	0.00	15,272	0.04	0
베트남	50,276	5.71	-	0.00	-	0.00	-100
총계	880,338	100.00	4,463,499	100.00	35,600,301	100.00	243

[자료: Foreign Trade Statistics portal - Public Statistics Authority]

중국은 해당 HS 코드 8544.60.30(10쌍 이상의 전선으로 구성된 전선 및 전화 케이블) 전선 및 전선 수입에서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수입의 약 73%가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99% 이상으로 상승하여 사실상 대카타르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2021 HS Code 8544.60.90수입동향>

(단위: 달러, %)

국가	2019		2020		2021		CAGR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벨기에	270,520	14.45	360,502	23.05	383,255	36.17	12
중국	14,722	0.79	-	0.00	266,322	25.13	163
독일	1,100,518	58.78	727,641	46.52	229,138	21.62	-41
인도	170,423	9.10	111,706	7.14	152,191	14.36	-4
이탈리아	18,619	0.99	84,021	5.37	28,768	2.71	16
멕시코	15,030	0.80	-	0.00	-	0.00	-100
터키	107,841	5.76	246,996	15.79	-	0.00	-100
영국	108,555	5.80	33,244	2.13	-	0.00	-100

미국	66,005	3.53	-	0.00	-	0.00	-100
총계	1,872,233	100.00	1,564,110	100.00	1,059,674	100.00	-17

[자료: Foreign Trade Statistics portal - Public Statistics Authority]

해당 HS 코드 8544.60.90 에 해당하는 제품 수입의 대부분은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인도 및 독일에서 발생했다. 이 중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2019년 59%의 시장 점유율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47%, 그리고 2021년에는 27%까지 감소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2019년 14%의 시장 점유율에서 2021년 36%까지 상승하며 꾸준히 수입량 및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또한 2019년 1% 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2021년에는 25%로 크게 증가하여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쟁 동향

카타르의 경우 해외 제조 기업들과 현지 제조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를 양상을 보인다. 주변 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에는 각각 케이블 제조사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지만 카타르로의 수출은 거의 진행하지 않고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카타르 현지 제조사로는 Qatar International Cables와 Doha Cables가 있다. 국제 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CRU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카타르 내 전선 및 케이블 총 생산량은 모든 범주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카타르 내 해당 제품의 수요 증가를 가리키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2019-2021 카타르 내 전선 및 케이블 생산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전선 및 케이블 분류	2019		2020		2021	
	생산액	생산무게	생산액	생산무게	생산액	생산무게
저전압 에너지	37.7	4.7	38.3	4.6	53.6	4.7
구리 전원 케이블	504.5	56.8	503.9	55.6	697.4	57.1
알루미늄 전원 케이블	7.6	1.6	7.6	1.6	9.3	1.7
내부 통신/ 데이터	9.6	0.7	11.1	0.9	14.3	0.9
권선(winding wire)	4.7	0.7	4.7	0.7	7	0.7

[자료: CRU Report - Wire and cable market outlook April 2022]

현재 카타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중인 우리 기업으로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고압 케이블 관련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카타르에 현지 사무실을 설립하여 본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 아울러, 카타르 수전력청 Kahramaa로부터 승인 받은 국제 케이블 제조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Kahramaa 승인 전선 및 케이블 제조기업 목록>

440kV 케이블
NEXANS, 벨기에, 노르웨이
PRYSMIAN, 홀란드 ; for shorter lengths inside S/S), Prysmian, France
Sumitomo, 일본
FURUKAWA Electric, Chiba, 일본
Mitsubishi/EXSYM, 일본
L. S. 한국
Taihan, Danjin, 한국

Sudkabel, 독일
220kV 케이블
NEXANS,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PRYSMIAN, 홀란드, Prysmian, 프랑스
Sumitomo, 일본
FURUKAWA Electric, Chiba, 일본
Mitsubishi/EXSYM, 일본
L. S. Korea
TAIHAN, Danjin, 한국
SUEDKABEL, 독일
SILEC, 프랑스
BRUGG, 스위스
NKT, BERLIN, 독일
Demirer Kablo, Bilecik, 튀르키예
132kV 케이블 (UP TO 2000 SQMM)
NEXANS,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PRYSMIAN, 프랑스, 핀란드, 홀란드
Sumitomo, 일본
FURUKAWA Electric, Chiba, 일본
Mitsubishi/EXSYM, 일본
L. S. 한국
Taihan, 한국
Sudkabel, 독일
NKT 스웨덴
BRUGG, 스위스
NKT Berlin 독일
Doha Cables, 카타르
ILJIN, Hwaseong, 한국
QICC, 카타르
Demirer Kablo, Bilecik, 튀르키예
SILEC, 프랑스
66 kV 케이블
NEXANS,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호주
PRYSMIAN, 프랑스, 핀란드, 홀란드
Sumitomo, 일본
FURUKAWA Electric Chiba 일본
Mitsubishi/EXSYM, 일본
L. S. Korea
TAIHAN, 한국
Sudkabel, 독일
NKT 스웨덴
BRUGG, 스위스
NKT Berlin 독일
Doha Cables, 카타르
ILJIN, Hwaseong, 한국
Demirer Kablo, Bilecik, 튀르키예
QICC, 카타르
SILEC, 프랑스

[자료: Kahramaa 홈페이지]

전선 및 케이블 사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은 현재 입찰 평가 단계에 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케이블 관련 프로젝트 리스트>

프로젝트	산업	세부산업	추정예산 (단위: \$m)	진행단계	완료 연도
KAHRAMAA - Qatar Power Transmission System Expansion: Substations	전력	변전소, 제어센터	80	주요 계약 입찰	2024
KAHRAMAA - Qatar Power Transmission System Expansion	전력	케이블, 가공선	50	입찰 평가	2025
KAHRAMAA - Facility E: Power Evacuation and IWPP	전력	케이블, 가공선	3,500	입찰 평가	2027
KAHRAMAA - Facility E IWPP: Supply & Installation of 400kV OHTL for Facility E	전력	케이블, 가공선	45	입찰 평가	2024

[자료: Meed Projects]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타르 정부는 66kV와 132kV를 생산하는 현지 케이블 제조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220kV, 440kV와 같은 고전압 케이블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편이라고 한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1068이 경우, 새로운 지하 EHV/HV 케이블 및 400kV에서 66kV까지의 다양한 전압 레벨의 가공선에 대한 EPC 계약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는 한국, 일본, 유럽의 제조사들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각 국가는 고품질의 제품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가 전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정부에서 132kV 관련 프로젝트에는 현지 제조 기업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지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구조 및 승인 절차

카타르에서 전기 케이블을 설치하여 사용 하려면 Kahrama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 제시된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승인 받은 제조업체들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유통은 입찰에서 낙찰된 제조사의 현지 사무실을 통해 직접 수입하거나, 프로젝트를 수주한 EPC 회사를 통해 유통이 진행된다.

- Kahramaa 입찰 발표 확인 링크: <https://www.km.qa/Business/Pages/Tenders.aspx>

Kahramaa에는 벤더 등록 및 제품 등록과 같은 두가지 유형의 등록 방법이 있다. Kaharamaa는 현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카타르에서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 Kaharamaa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벤더 등록 : 공개 입찰에 있어 수전력청으로부터 직접 인콰이어리를 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다. 등록 양식은 담당부서 이메일(procurement@km.qa)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 등록 절차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 제품 등록: 담당 부서 이메일(thjohn@km.qa)로 연락하여 제품등록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품 범주에 맞는 양식을 받아 보게 된다. 제품 등록의 경우 제조사 및 제품 품질 평가가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 등록 신청서 또한 수전력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 할 수 있다. 담당부서 주소는 다음과 같다.

Accreditation and Qualification Committee

Qatar General Electricity & Water Corporation (KAHRAMAA)

Doha-Qatar

* 방문제출 장소: KM1 Reception, Attn: Materials department. secretary, KM1, 7th Floor)

관세율 및 인증

카타르 수전력청 Kahramaa에 등록된 제품이라면HS Code 854460의 경우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특별한 수입 규정이나 인증 기준은 없다. 하지만 수입에 대해 5%의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며, GCC 관세 동맹에 따라 해당 국가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가 된다.

시사점

카타르 정부는 올해 11월 자국에서 개최될 2022 FIFA 월드컵 이후 향후 몇 년 동안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국가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부가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카타르 시장에서 최상의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 현지 지사를 설립할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 OEC 정보에 따르면 이 제품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67억 2000만 달러이며 한국은 8.55%의 점유율로 1,000볼트 이상(HS 코드 854460)에 대한 전기 도체의 두 번째로 큰 글로벌 수출 국가로 입지를 다졌다. 카타르의 통계에서 우리나라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제조업체는 Kahramaa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 동 기관에 연락하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현지 파트너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자료원: Meed Projects, Kahramaa 홈페이지, Foreign Trade Statistics portal - Public Statistics Authority, CRU Report - Wire and cable market outlook April 2022, 주요 일간지(Gulf Times, Peninsula, Qatar Tribune), KOTRA도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4. 임금님께 진상되던 지역 특산물, 미국 증명표장으로 등록하려면? (3부)

- 미국에서 증명표장권자가 되려면 숙지해야 할 정보 총정리
- “ROQUEFORT”, “DARJEELING” 사례로 살펴보는 증명표장 인증 기준, 사용 규칙, 취득 절차, 권리 행사 내역

지난 9월 12일 드라마 ‘오징어 게임(Squid Game)’은 황동혁 감독의 감독상과 이정재 배우의 남우주연상을 필두로,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E Emmy Awards) 6관왕 수상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최근 미국 내 K-콘텐츠의 인기 여파로 다양한 한국산 상품·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 주목한 뉴욕 IP-DESK는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에 대한 내용을 3부작으로 준비해 보았다.

1부에서는 미국에서 증명표장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증명표장의 정의와 유형, 소유 주체, 증명표장권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고, 2부에서는 증명표장의 법정 요건 및 등록 취소 사유, 증명표장 출원 시 적용되는 특별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3부에서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geographic certification marks) “ROQUEFORT”(등록번호 571,798)와 “DARJEELING”(등록번호 1,632,726 및 2,685,923)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증명표장 인증 기준(certification standards), 표장 사용 규칙, 라이선스 취득 절차, 증명표장권 행사 내역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프랑스 로크포르 지방의 블루 치즈 증명표장 “ROQUEFORT”

로크포르 치즈는 프랑스 아베롱주(Department of Aveyron) 로크포르 지방(Community of Roquefort)의 천연 석회암 동굴에서 양젖을 푸른곰팡이로 숙성시킨 블루치즈의 한 종류이다. 로마 제국의 카롤루스 대제(Charlemagne)가 즐겨먹었고,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와 장바티스트 르 롱 달랑베르(Jean-Baptiste le Rond d'Alembert)로부터 “치즈의 왕(le roi des fromages)”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는 로크포르 치즈는 1411년 프랑스 국왕 샤를 6세(Charles VI)가 로크포르 주민들에게 독점 생산권을 부여했다고 한다. 1666년에는 툴루즈(Toulouse) 의회가 가짜 로크포르 치즈 판매자들을 벌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로크포르 치즈는 1925년부터 프랑스의 원산지 통제 명칭(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 제도로 보호를 받기 시작한 최초의 치즈로 역사적 유서가 깊다.

<로크포르 치즈>



[자료: Roquefort AOP Instagram]

1952년 2월 13일 로크포르 지방정부(Community of Roquefort)는 “치즈(cheese)”를 지정상품으로 기재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ROQUEFORT”(등록번호 571,798)를 미국에서 출원했다. 동 표장의 미국 내 최초 사용일은 1866년 10월 1일로 보고되었고, 1953년 3월 10일 자로 특허상표청에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 증명표장권은 2013년 5월 9일 로크포르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인 로크포르 지방의 양유 생산자 및 제조업체 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Producteurs de Lait de Brebis et des Industriels de Roquefort)(이하 “양유 연맹”)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증사항 진술서(certification statement)는 ROQUEFORT 표장이 “프랑스 아베롱주 로크포르 지방의 자연 동굴에서 숙성시킨 양젖으로 만들어진 상품임을 인증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THE CERTIFICATION MARK IS USED UPON THE GOODS TO INDICATE THAT THE SAME HAS BEEN MANUFACTURED FROM SHEEP'S MILK ONLY, AND HAS BEEN CURED IN THE NATURAL CAVES OF THE COMMUNITY OF ROQUEFORT, DEPARTMENT OF AVEYRON, FRANCE.)”라고 명시하고 있다.

<ROQUEFORT 증명표장 등록 현황>



Word Mark	ROQUEFORT
Goods and Services	ICA, USA, G & S, CHEESE, FIRST USE: 18661001, FIRST USE IN COMMERCE: 18661001
Mark Drawing Code	(5) WORDS, LETTERS, AND/OR NUMBERS IN STYLIZED FORM
Serial Number	71624872
Filing Date	February 13, 1952
Current Basis	1A
Original Filing Basis	1A
Registration Number	0571798
Registration Date	March 10, 1953
Owner	(REGISTRANT) COMMUNITY OF ROQUEFORT, THE MUNICIPALITY FRANCE 228 East 45th Street, 17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17 (LAST LISTED OWNER) CONFEDERATION GENERALE DES PRODUCTEURS DE LAIT DE BREBIS ET DES INDUSTRIELS DE ROQUEFORT ASSOCIATION FRANCE 36 AVENUE DE LA REPUBLIQUE, B.P. 40348 MILLAU CEDEX FRANCE 12103
Assignment Recorded	ASSIGNMENT RECORDED
Attorney of Record	Gloria Tsui-Yip
Type of Mark Register	CERTIFICATION MARK PRINCIPAL-2(F)
Affidavit Text	SECT 15, SECTION 8(10-YR) 20130306
Renewal	4TH RENEWAL 20130306
Other Data	THE CERTIFICATION MARK IS USED UPON THE GOODS TO INDICATE THAT THE SAME HAS BEEN MANUFACTURED FROM SHEEP'S MILK ONLY, AND HAS BEEN CURED IN THE NATURAL CAVES OF THE COMMUNITY OF ROQUEFORT, DEPARTMENT OF AVEYRON, FRANCE.
Live/Dead Indicator	LIVE

[자료: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ROQUEFORT 증명표장 등록증>

Int. Cl.: 29
 Prior U.S. Cls.: A and A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0 Year Renewal

Reg. No. 571,798
 Registered Mar. 10, 1953
 Renewal Term Begins Mar. 10, 1993

TRADEMARK
PRINCIPAL REGISTER

ROQUEFORT

COMMUNITY OF ROQUEFORT, THE
 (FRANCE MUNICIPALITY).
 12250 ROQUEFORT SUR SOULZON-
 FRANCE

THE CERTIFICATION MARK IS
 USED UPON THE GOODS TO INDICATE
 THAT THE SAME HAS BEEN
 MANUFACTURED FROM SHEEP'S
 MILK ONLY, AND HAS BEEN CURED

IN THE NATURAL CAVES OF THE
 COMMUNITY OF ROQUEFORT, DE-
 PARTMENT OF AVEYRON, FRANCE.
 SEC. 20F).

FOR CHEESE, IN CLASS A
 FIRST USE 10-1-1866; IN COMMERCE
 10-1-1866.

SER. NO. 71-624,472, FILED 2-13-1952.

*In testimony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and caused the se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o be affixed on Mar. 23, 1999.*

COMMISSIONER OF PATENTS AND TRADEMARKS

[자료: USPTO TSDR Case Viewer]

증명표장 출원인은 제3자가 자신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해당 표장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및 일련의 인증 요건을 담은 문서(정관)를 제출해야 한다. 로크포르 지방정부가 1952년 증명표장 출원 당시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한 출원서 및 인증 기준 문서 등은 찾을 수 없지만, 로크포르 명칭은 1925년에 처음 원산지 표시로 공식 인정받은 이후 몇 차례 더 개정된 프랑스 법령의 적용을 받다가, 현재는 유럽 연합의 원산지 표시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 규정에 맞게 가공된 프랑스의 원산지 표시 보호(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AOP))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면 인증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양유 연맹 웹사이트도 로크포르 명칭의 PDO/AOP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 중임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가 제출한 로크포르 치즈의 PDO 기준 개정안을 승인하는 2019년 4월 3일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시행 규칙(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이하 “시행 규칙”)은 로크포르 치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인증 기준에 관한 시행 규칙 주요 조항 원문을 발췌·번역하여 소개한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시행 규칙 발췌 및 번역>

3.2. 원산지 표시 보호 대상

“Roquefort”는 양의 생원유를 해당 지역 특유의 전통적인 제조 관행에 따라 만든 푸른곰팡이 치즈이다. 압착하기 전 생치즈는 페니실리움 로크포르티(Penicillium roqueforti) 포자로 배양하며 발효 후 가열했다.

을 때 촉촉한 외피를 포함해 건조 중량 100g 당 최소 52g의 지방으로, 숙성된 치즈 100g당 최소 55g의 지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치즈는 직경 19~20cm, 높이 8.5~11.5cm, 무게 2.5~3kg의 원통형으로 제조한다. 내부는 부드럽고 조밀하며, 청록색 맥상이 균일하고, 매우 독특한 향과 은은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고급스럽고 강렬한 풍미를 지닌다. 치즈는 제조일로부터 최소 90일의 숙성 기간을 거쳐 완성된다.

3.3. 사료 및 원료

로크포르 치즈는 라콘느(Lacaune) 품종의 양젖으로 만든다. 원유를 생산하는 양들은 목초, 여물, 곡물만 먹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육되며, 건조 중량 기준으로 연간 소비되는 양 먹이의 75%는 치즈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난 것이어야 한다. 여물, 곡물, 보충 사료 등 양에게 공급하는 먹이(단, 건조, 특수 제작 사료와 이에 준하는 사료는 제외)는 원산지와 무관하게 양 한 마리당 연간 건조 중량 200kg을 초과하는 양을 목장 외부에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역은 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지가 거의 없고 여름 가뭄이 빈번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사료의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보충 사료 등 모든 먹이를 반드시 동 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만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목초가 있고 날씨가 허락한다면 매일 방목은 의무사항이다. 또한, 양들이 마구간에 머무는 동안, 양 한 마리 당 1일 평균 최소 1kg의 건초를 배급해야 한다.

3.4. 지정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생산 과정

양유 생산부터 치즈 숙성(maturation)까지의 전 단계는 지정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치즈는 미요지방법원(Millau Regional Court)의 1961년 7월 12일 자 판례가 정의하는 로크포르-쉬르-술종(Roquefort-sur-Soulzon) 지방 콩발루(Combalou) 산 동굴에서 숙성되어야(ripen) 한다. 이후 추가 숙성(maturing) 과정은 반드시 로크포르-쉬르-술종 지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3.6. 원산지 표시 보호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

로크포르 치즈를 통째로 팔던 혹은 잘라서 팔던 간에, 'Roquefort' 원산지는 해당 포장에 인쇄된 가장 큰 문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이 정보는 치즈 상자나 기타 용기 및 포장에도 삽입한다. 또한, 1930년에 제작된 '적색 양(Brebis Rouge)' 상표도 라벨에 부착해야 한다. 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와 기타 특수 무역·제조 표장, 기업명이나 심볼을 제하면 라벨, 광고, 커뮤니케이션, 송장 또는 상업 문서에 'Roquefort'를 포함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5. 지리적 영역과의 연관성

해당 지리적 영역은 마시프 상트랄(Massif Central) 남부 산록 지대와 산악 계곡 일부를 포함한다. 해발 고도 400m 이상의 지대로 지중해와 대서양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봄철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는 긴 겨울과, 토양 수분 함량이 낮아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 가뭄이 특징적이다. 헤르시니아 조산 운동에 의한 지질학적 물질 또는 중생대의 석회암 퇴적물이 침식되면서 해당 지역은 지형학적으로 고저가 심하고 돌이 많다. 이 영역에는 방목 가능한 목초지와 초원도 포함되는데, 얼마되지 않는 경작에 적절한 토지는 임시 초원과 자가 소비를 위한 곡물 재배 용도로 이용된다.

로크포르-쉬르-술종 마을에 있는 로크포르 치즈를 숙성하는 동굴은 수 세기 동안 균열과 붕괴를 반복해 온 콩발루 석회절벽 기슭의 구릉에 자갈(scree)로 이루어져 있다. 자갈 사이 틈으로 '플뢰린(fleurines)' 이라고 불리는 천연 굴뚝을 통해 신선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다. 플뢰린은 외부 기온 및 기압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차고 습한 공기를 동굴로 주입시키는 제너레이터 역할을 한다. 지면을 통해 들어온 공기는 북동향 절벽의 냉기로 냉각된 후, 자갈 바닥으로 낙하하는데 지하 저수지와 만나면서 습기를 머금게 된다. 플뢰린은 이처럼 페니실리움 로크포르티가 잘 자라는 천연 미기후(micro-climate)를 동굴 안에 형성하고 최적의 숙성 환경을 유지한다. -중략-

[자료: 유럽 연합 의회]

<Roquefort 원산지 표시 보호(PDO) 기준 개정안 승인에 관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시행 규칙 발췌>

C 133/2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0.4.2019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f 3 April 2019

on the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f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n amendment, which is not minor, to a product spec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53 of Regulation (EU) No 1151/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for the name

'Roquefort' (PDO)

(2019/C 133/02)

THE EUROPEAN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aving regard to Regulation (EU) No 1151/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November 2012 on quality schem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¹⁾), and in particular Article 50(2)(a) in conjunction with Article 53(2) thereof,

Whereas:

- (1) France has sen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n amendment, which is not minor, to the product specification of 'Roquefort' (PDO)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4) of Regulation (EU) No 1151/2012.
- (2)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of Regulation (EU) No 1151/2012 the Commission has examined that application and concluded that it fulfil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at Regulation.
- (3) In order to allow for the submission of notices of oppos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of Regulation (EU) No 1151/2012,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n amendment, which is not minor, to the product specification, a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of Article 10(1)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668/2014 (⁽²⁾), including the amended single document and the reference to the publication of the relevant product specification, for the registered name 'Roquefort' (PDO) should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AS DECIDED AS FOLLOWS:

Sole Article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n amendment, which is not minor, to the product specification,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of Article 10(1)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668/2014, including the amended single document and the reference to the publication of the relevant product specification, for the registered name 'Roquefort' (PDO) is contained in the Annex to this Deci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of Regulation (EU) No 1151/2012, the publication of this Decision shall confer the right to oppose to the amendment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is Decis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Done at Brussels, 3 April 2019.

For the Commission

Paul HOGAN

Member of the Commission

[자료: 유럽 연합 의회]

'Roquefort' 원산지 표시를 하려면 위에 적시된 치즈의 시각·미각·후각적 특징, 숙성 방법과 기간, 양의 품종, 사료 및 사육 방식, 치즈 숙성 방법, 라벨링 규정, 지정된 지리적 영역 범위 요건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현재 해당 PDO 기준을 준수하는 치즈 제조사로는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7개 기업과 1,500여개의 목장이 있으며, 생산 전 단계에서 양유 연맹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로크포르 치즈 원산지로 지정된 지리적 영역>



[자료: 로크포르 지방 양유 생산자 및 제조업체 연맹]

로크포르 지방정부는 미국에 증명표장을 등록한 이후 권리 행사 및 침해자 단속에 활발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일례로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치즈에 “Imported Roquefort Cheese”란 라벨을 달아 미국으로 수입해 판매한 피고들을 상대로 증명표장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2년 승소하기도 했다. Community of Roquefort v. William Faehndrich, Inc. 소송 사건의 피고들은 ‘Roquefort’가 원산지나 제조 방식에 무관하게 양젖으로 만든 푸른곰팡이 치즈를 뜻하는 일반명·관용명칭(generic term)이라고 주장했지만 제2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로크포르 지방정부가 수백 년 동안 증명표장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뉴욕주에서 1940년에 설립된 로크포르 협회 주식회사(Roquefort Association, Inc.)는 로크포르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하에 치즈나 드레싱에 “ROQUEFORT” 명칭을 남용하는 미국 내 도·소매업자, 식당, 기관 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왔다. 1950년 3월부터는 최소 15% 이상의 로크포르 치즈와 최대 85% 이하의 치즈 외 성분이 들어간 드레싱이나 달에 대해(단, 다른 종류의 치즈는 들어가지 않고, 드레싱에서 로크포르 치즈 맛이 충분히 드러날 때에 한하여) 제조업자들이 “ROQUEFORT CHEESE DRESSING”이나 “ROQUEFORT SALAD DRESSING”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미국에서 로크포르 명칭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한편, 로크포르 협회의 뉴욕주 법인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나 최근 수행한 증명표장 단속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례 2. 인도 다즐링 지역에서 생산된 홍차 증명표장 “DARJEELING”

세계 3대 홍차로 거론되는 다즐링 홍차는 히말라야 산맥과 맞닿아있는 인도 북동부 고지대 다즐링(Darjeeling) 지역에서 재배되며, 부드럽고 은은한 맛에 청포도(muscatel) 같은 특유의 향미로 유명하다. 다즐링 홍차는 인도 국회의원, 차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 수출·무역업자, 다원 직원들, 차 소비자, 차 생산 지역의 지방정부 대표 등 3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도 차 위원회(Tea Board India)에서 관할한다. 1953년 제정된 차법(Tea Act)에 의해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산하 정부기관으로 1954년 4월 1일에 출범한 인도 차 위원회는 인도 중앙정부의 지휘 하에 인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차 품종의 재배·제조·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차 등급 기준을 정하고, 차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다즐링 홍차 다원>



[자료: 인도 차 위원회]

인도 차 위원회는 “차(tea)”를 지정상품으로 기재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DARJEELING” 로고에 대한 디자인표장(등록번호 1,632,726)과 표준문자표장(등록번호 2,685,923) 형태로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등록했다. 1991년 1월 22일에 등록된 디자인표장의 인증사항 진술서는 “증명표장권자의 허락 하에 의해 사용될 때 이 표장은 해당 혼합차에 100% 인도 다즐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하나 이상의 차 품종이 포함되며, 증명표장권자가 제정한 다른 규격 요건에도 부합함을 인증한다.(THE CERTIFICATION MARK, AS USED BY PERSONS AUTHORIZED BY CERTIFIER, CERTIFIES THAT A BLEND OF TEA CONTAINS AT LEAST ONE HUNDRED PERCENT(100%) TEA ORIGINATING IN THE DARJEELING REGION OF INDIA, AND THAT THE BLEND MEETS OTHER SPECIFICATIONS ESTABLISHED BY THE CERTIFIER)”로 확인된다. 2003년 2월 11일에 등록된 “DARJEELING” 표준문자표장도 인증사항 진술서 내용이 이와 거의 같다.

<DARJEELING 로고 증명표장 등록 현황>



Word Mark	DARJEELING
Goods and Services	ICA, USA, G & S TEA, FIRST USE: 19870831 FIRST USE IN COMMERCE: 19870910
Mark Drawing Code	(3) DESIGN PLUS WORDS, LETTERS, AND/OR NUMBERS
Design Search Code	02 03 02 - Silhouettes of women ; Women depicted as shadows or silhouettes of women 02 03 22 - Busts of women in profile ; Heads of women in profile ; Portraiture of women in profile ; Women - head, portraiture or busts in profile 02 03 24 - Women, stylized, including women depicted in caricature form 05 03 08 - More than one leaf, including scattered leaves, bunches of leaves not attached to branches 26 01 08 - Circles having letters or numerals as a border ; Circles having punctuation as a border ; Letters, numerals or punctuation forming or bordering the perimeter of a circle
Serial Number	73737696
Filing Date	July 1, 1988
Current Basis	1A
Original Filing Basis	1A
Published for Opposition	October 30, 1990
Change in Registration	CHANGE IN REGISTRATION HAS OCCURRED
Registration Number	1632726
Registration Date	January 22, 1991
Owner	(REGISTRANT) TEA BOARD OF INDIA CORPORATION INDIA 350 FIFTH AVENUE NEW YORK NEW YORK 10018
Attorney of Record	CHARLES T.J WEIGELL
Type of Mark	CERTIFICATION MARK
Register	PRINCIPAL
Affidavit Text	SECT 15 SECT 8 (6-YR) SECTION 8(10-YR) 20220713
Renewal	3RD RENEWAL 20220713
Other Data	THE CERTIFICATION MARK, AS USED BY PERSONS AUTHORIZED BY CERTIFIER, CERTIFIES THAT A BLEND OF TEA CONTAINS AT LEAST ONE HUNDRED PERCENT (100%) TEA ORIGINATING IN THE DARJEELING REGION OF INDIA, AND THAT THE BLEND MEETS OTHER SPECIFICATIONS ESTABLISHED BY THE CERTIFIER.
Live/Dead Indicator	LIVE

[자료: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DARJEELING 증명표장 등록 현황>

DARJEELING

Word Mark	DARJEELING
Goods and Services	IC A, USA, G & S: Tea, FIRST USE: 19870831, FIRST USE IN COMMERCE: 19870910
Mark Drawing Code	(1) TYPED DRAWING
Serial Number	76357485
Filing Date	January 10, 2002
Current Basis	1A
Original Filing Basis	1A
Published for Opposition	November 19, 2002
Registration Number	2685923
Registration Date	February 11, 2003
Owner	(REGISTRANT) Tea Board of India CORPORATION INDIA 350 Fifth Avenue New York NEW YORK 10018
Attorney of Record	CHARLES T.J. WEIGELL
Prior Registrations	1632726
Type of Mark	CERTIFICATION MARK
Register	PRINCIPAL
Affidavit Text	SECT 8 (6-YR) SECTION 8(10-YR) 20130221
Renewal	1ST RENEWAL 20130221
Other Data	The Certification Mark, as used by authorized persons, certifies that the tea contains at least one hundred percent (100%) tea originating in the Darjeeling region on India, and that the blend meets other specifications established by the certifier.
Live/Dead Indicator	LIVE

[자료: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미국에서 “DARJEELING”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인증 기준과 라이선스 규정은 인도 차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동 기관 웹사이트(<https://www.teaboard.gov.in/pdf/policy/usa.pdf>)에 게시한 “Protection and administration of Darjeeling in USA” 문서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주요 섹션 원문을 발췌·번역하여 소개한다.

<Protection and administration of Darjeeling in USA 발췌 및 번역>

C. 라이선싱 프로그램

-중략- 위원회는 오로지 진품만 인도 국외로 반출되어 미국에서 다즐링 홍차로 유통되도록 다즐링 홍차의 공급망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구축해왔다. 해당 차에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 이 증명표장에 대한 사용 허가를 구하는 자는 누구든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비록 증명표장 라이선스가 DARJEELING 증명표장 규정 전문을 포함하고 있지만, (a) 미국에서 DARJEELING 홍차로 팔리는 상품이 모두 진품일 것, 그리고 (b) 진품 DARJEELING 홍차 판매업자 전원에게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 라이선싱 프로그램은 (1) 수입업자와 (2) 수입업자가 아닌 자로 양분하여 운영한다. 이 같은 제도는 DARJEELING 증명표장을 부착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 상품이 DARJEELING 증명표장 규정에 명시된 다즐링 홍차 기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가 통제하고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3. “다즐링 홍차”의 정의

“다즐링 홍차(DARJEELING tea)”란 (a) Schedule B에 나열된 지리적 영역에 위치하며 1953년 입법된 (인도) 차법 혹은 이를 대체하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인도 차 위원회에 등록된 다원에서 경작, 재배, 생산된 차로, (b) (인도 차 위원회가 수시로 개정 가능한) Schedule C에 나열된 지리적 영역에 위치한 다원에서 경작, 재배, 생산되고, (c) Schedule B에 나열된 지리적 영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가공 및 제조되며, (d) 인도 차 위원회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시음한 결과, 인도 다즐링 지역에서 경작, 재배, 생산되는 차 본연의 맛, 향, 식감 등 감각적인 특징을 자연적으로 갖췄다고 판단하는 차를 가리킨다. 차 시음 전문가는 수년 간의 실무 훈련과 차 평가 경험, 그리고 다양한 다류의 향, 맛, 식감에 대해 고도로 발달된 감각을 갖고 있기에 이 같은 차의 특징을 평가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5. 증명표장의 사용

5.1. 위원회는 DARJEELING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이 조항에 적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라이선시(licensee)로만 제한하고자, 모든 라이선시에게 증명표장 사용을 통제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라이선스 신청자는 자신이 증명표장을 붙여 취급할 차 상품이 관련 증명표장 규정에 부합하고 해당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5.2. 동 규정 제3조에 명시된 다즐링 홍차의 특징을 갖춘 차 상품에 대해서만 증명표장의 부착 또는 사용이 허용된다. 제5조 3항 및 제5조 4항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DARJEELING 증명표장은 단독으로 쓰이거나 다른 상표와 병기되는 것에 무관하게 차잎 100%가 Schedule C에 나열된 인도 다즐링 지역 다원 중 한 군데에서 유래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5.3. Schedule C에 나열된 인도 다즐링 지역 다원 두 군데 이상에서 재배한 차를 혼합할 경우에는, 각각의 차잎을 위원회가 인가한 판매업자(Authorized Seller)로부터 구입하고 해당 차잎이 Schedule C에 나열된 인도 다즐링 지역 다원 한 군데에서 생산된 경우에 한해 증명표장 사용이 허락된다. 단, 이때 혼합차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포장지에 “혼합(blend)” 또는 “혼합된(blended)”이라는 용어를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5.4. 설명 “혼합(blend)” 또는 “혼합된(blended)”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인도 다즐링산이 아닌 혼합차 상품에 대해서는 DARJEELING 증명표장을 쓸 수 없다. 만일 다즐링 홍차가 제3조에 정의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와 혼합된 경우, “DARJEELING 홍차”라고 명명해서는 안 되며, “Darjeeling”이란 단어만 쓸 수 있고, 포장에(이들테면 성분 목록 부분에) 다즐링 홍차의 배합 비율을 반드시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때 “Darjeeling”이란 단어가 소비자들에게 혼합차의 내용물과 원산지를 왜곡하지 않도록 서체, 디자인, 크기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5.5. 증명표장은 구매자 및 소비자들의 눈에 띄도록 다즐링 홍차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모든 증명표장 부착물은 동 표장이 인도 차 위원회의 소유라는 설명을 동반해야 한다. 라이선시들은 DARJEELING 증명표장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 안에서 표장의 색상, 크기, 글자(lettering) 등 사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단, 다즐링 로고는 반드시 Schedule A과 같이 표시되어야 함), 증명표장을 라이선시의 상표나 기업명과 확연히 구분되는 크기나 서체로 표기해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증명표장 바로 옆에 어떤 문구를 쓸 것인지 어떤 관계를 명시할 것인지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만일 인도 차 위원회가 증명표장이 부적절하게 표기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라이선시는 표장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5.6. 라이선시는 증명표장을 자사의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 또는 상표·상호명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거나 등록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SCHEDULE B

인도 서벵골주(State of West Bengal) 다즐링구(District of Darjeeling) 안의 다음 지역:

- (i) 사다르(Sadar) 지구 내 언덕 지대
- (ii) 칼림퐁(Kalimpong) 지구 내 언덕 지대
- (iii) 다즐링구 당국이 20, 21, 23, 24, 29, 30, 33번으로 지정한 지역을 제외한 쿠르성(Kurseong) 지구. 위의 번호로 지정된 지역은 다즐링구 쿠르성 지구 내에 언덕이 없는 지대로 다즐링 홍차의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 차잎을 생산할 수 없다.

SCHEDULE C

1. 알로바리(Allobari)
2. 암비오크(Ambiok) (힐튼(Hilton))
3. 아리아(Arya)
4. 아봉그로브(Avongrove)
5. 암부티아(Ambootia)
6. 바담탐(Badamtam)
- 중략-
86. 어퍼 파구(Upper Fagu)
87. 바 텍바(Vah Tukvar)

[자료: 인도 차 위원회]

미국에서 DARJEELING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인도 차 위원회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이들은 <https://www.teaboard.gov.in/pdf/policy/usa.pdf>에 첨부된 신청서와 라이선스 계약서 서명본 2부를 제출하면 된다. 수입업자의 경우 라이선스 신청비 50달러와 연간 구입하는 다즐링 홍차 1kg 당 1달러의 라이선스비(지난 3년 간 평균 구입 물량을 바탕으로 납부 후, 매년 연말에 실제 구입한 물량을 정확히 집계하여 정산)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다즐링 증명표장을 부착하여 판매한 홍차 물량을 보고하는 서류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인도 차 위원회가 DARJEELING 증명표장권 행사를 위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다만, 1999년에 The Republic of Tea, Inc.(이하 “TRT”)라는 한 캘리포니아주 기업이 “차”를 지정상품으로 한 “DARJEELING NOUVEAU”라는 상표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하자, 위원회는 이에 반대하는 상표등록이의신청(trademark opposition proceeding)을 2000년 5월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TRT는 위원회가 다즐링산이 아닌 홍차 성분이 혼합된 차 상품에 대해 DARJEELING 표장을 쓰도록 허락하는 것은 증명표장 사용에 대한 통제권 행사 불가를 의미한다는 논리로 동 표장의 등록 취소를 시도했다. 하지만 상표심판원은 2006년에 내린 심결 *Tea Board of India v. the Republic of Tea, Inc.*에서 다즐링 홍차가 섞인 상품 중 일부 구성 성분이 설령 다른 지역에서 기원하더라도, 위원회가 적절한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면 DARJEELING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증명표장권자는 해당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가 충족해야 하는 일련의 인증 기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초기부터 라이선스 관리뿐만 아니라 증명표장 사용 현황 감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침해 상황에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이 같은 능동적인 조치 없이는 과거에 증명표장이었던 고유명사가 시중에서 점차 보통명사화 또는 관용명칭화(genericide)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1년 12월 15일 버지니아 동부 알렉산드리아 지구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Alexandria Division)은 *Interprofession Du Gruyère v. U.S. Dairy Export Council* 판례에서 “그뤼에르(GRUYERE)”가 비록 한때는 스위스 및 프랑스 내 치즈 생산지를 특정하는 용어로 이해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치즈 소비자들에게는 원산지와 무관하게 치즈의 한 종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스위스 그뤼에르 협회(Swiss Interprofession du Gruyère)와 프랑스 그뤼에르 조합 협회(French Syndicat Interprofessionnel du Gruyère)가 미국에 공동 출원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GRUYERE”(출원번호 86/759,759)의 등록 거절을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두 협회는 현재 제4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에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증명표장 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산 상품을 차별화하고 고급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이번 뉴스레터 3부작을 통해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미국 내 증명표장권 취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자료: TMEP §§ 1306.02, 1306.03; *Cmty. of Roquefort v. William Faehndrich, Inc.*, 303 F.2d 494 (2d Cir. 1962); *Cmty. of Roquefort v. Santo*, 443 F.2d 1196 (C.C.P.A. 1971); *Interprofession Du Gruyère v. U.S. Dairy Exp. Council*, 575 F. Supp. 3d 627 (E.D. Va. 2021); *Tea Bd. of India v. the Republic of Tea, Inc.*, 80 U.S.P.Q.2d 1881 (T.T.A.B. 2006); *Roquefort v. Santo*, 157 U.S.P.Q. (BNA) ¶ 444 (T.T.A.B. Feb. 29, 1968);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TESS), <https://tmsearch.uspto.gov>; Trademark Status & Document Retrieval (TSDR), <https://tsdr.uspto.gov>;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Inquiry System (TTABVue), <https://ttabvue.uspto.gov/ttabvue>; Roquefort AOP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roquefort_aop; Roquefort, <https://www.britannica.com/topic/Roquefort>; Reign of Terroir, <https://www.smithsonianmag.com/travel/how-much-longer-roquefort-reign-king-cheese-180978999>; Loi du 26 juillet 1925 ayant pour but de garantir l'appellation d'origine du fromage de Roquefort,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684467>; Specifications for the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R o q u e f o r t ” , https://info.agriculture.gouv.fr/gedei/site/bo-agri/document_administratif-95e2de1b-420c-40c5-8fcd-3e1e0df9d711; 국내외 지리적 표시 제도,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4>;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Quality Schemes Explained, https://agriculture.ec.europa.eu/farming/geographical-indications-and-quality-schemes/geographical-indications-and-quality-schemes-explained_en; 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INAO), <https://www.inao.gov.fr/eng/produit/3291>; Les garanties de L'AOP, <https://www.roquefort.fr/les-garanties-de-laop>; Les engagements du collectif Roquefort, <https://www.roquefort.fr/les-engagements-du-collectif>;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f 3 April 2019 on the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f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n amendment, which is not minor, to a product spec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53 of Regulation (EU) No 1151/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for the name 'Roquefort' (PDO),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D0410\(01\)&from=IT](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D0410(01)&from=IT); FAQ, <https://www.roquefort.fr/faq/#toggle-id-2>; FOOD: The Bite in Roquefort, <https://content.time.com/time/subscriber/article/0,33009,871795,00.html>;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 <https://apps.dos.ny.gov/publicinquiry/NameHistory>; Autumn Flush: The Best Darjeeling Tea You'll (Likely Never) Taste, <https://www.npr.org/sections/thesalt/2016/10/04/496451715/autumn-flush-the-best-darjeeling-tea-you-ll-likely-never-taste>; Tea Board India, <https://www.teaboard.gov.in>; Protection and administration of Darjeeling in USA, <https://www.teaboard.gov.in/pdf/policy/usa.pdf>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